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 번 호	752
-------------	-----

발의연월일 : 2011. 10.

발의 의원 : 채명지 의원(대표발의)

1. 제안이유

우리군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수변지역에 구명환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나. 수변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안 제3조)

- 군수는 매년 1회 수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변 안전 취약 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다. 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안 제4조)

- 군수는 수변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라. 수변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안 제5조)

- 집중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함.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변 안전 취약구역”이라 함은 낙동강, 금호강, 하천,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등)에서 물놀이, 낚시, 산책 등 이용자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을 말한다.
- ② “구명환”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된 구조장비를 말한다.

제3조(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군수는 매년 1회 수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변 안전 취약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수변 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 ①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이 기간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채명지 의원 등 2인 발의 -

서명 인서

의원명	서명	날인
채명지	채명지	2019. 1. 2.
정수현	정수현	2019. 1. 2.